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용어 정의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결과, 감시대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종전과 동일하나 법상 용어 정의만 변경된 사안으로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25.12.9)

국토교통부령 제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화학물질관리법」 <u>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u>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u> 4. (현행과 같음)